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90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김성원・박덕흠・고동진

김선교 · 김소희 · 박충권

김정재 · 나경원 · 송석준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 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주요내용

- 가. 매장면적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 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매장면적의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 포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 2. 준대규모점포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 1. 대형마트: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2. 준대규모점포: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월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1. 의무휴업일 수
- 2. 의무휴업일의 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의하여 처분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 한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의무휴 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4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u></u>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매장면적의 합계가 9백제
	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u>미만인 점포</u>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	
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	
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	
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대형마트(대규</u>	<u>다음 각 호에 대하여</u> -
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	
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

	•

- 1.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 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 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 2. 준대규모점포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 1. 대형마트: 오전 0시부터 오 전 10시까지
- 2. 준대규모점포: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월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 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 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일로 지정할 수 있다.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1. 의무휴업일 수
- 2. 의무휴업일의 요일
-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